

제 호

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

성명

생년월일

주소

면허 종류

면허번호

갱신기간

「철도안전법」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갱신 받을 것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
직인

유의사항

갱신기간에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「철도안전법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(실효)됩니다.